

자동차 부품산업 일자리 플러스: 25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(변경)
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는 「자동차 부품산업 일자리 플러스: 25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8월 4일
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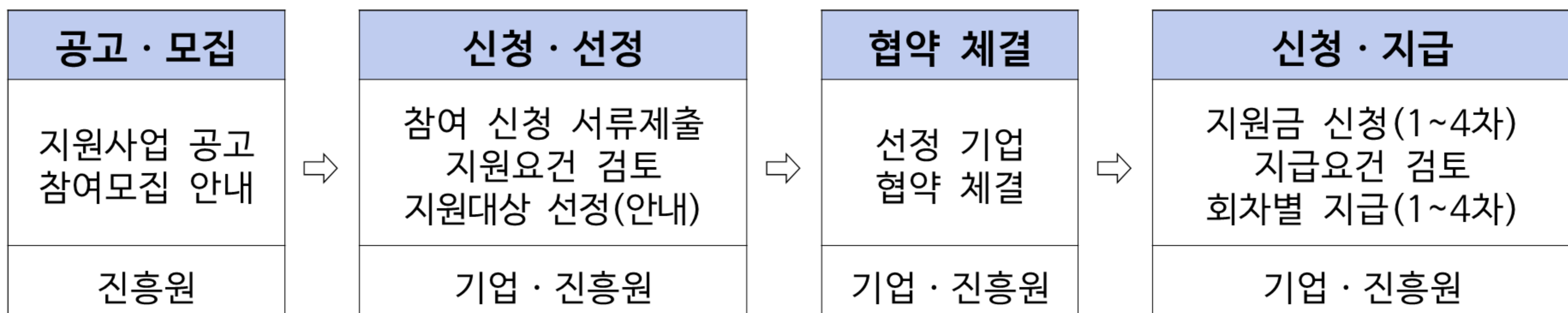
- 사업명: 자동차 부품산업 일자리 플러스-25년 일자리도약장려금

구분		사업목적
자동차 부품산업	일자리 도약장려금	강원지역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 및 고용주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 촉진 및 유지 지원

- 사업기간: 2025. 3. ~ 12.
- 지원대상: 만18~59세 근로자 채용, 도내 자동차부품기업(5인 이상)
- 지원내용

구분	지원규모	지원내용
자동차 부품산업	45명	1인 최대 연 360 또는 600만원 지원금 지급 * 24. 4. 25. ~ 25. 6. 10. 기간 내 채용된 정규직원

- 신청기간: 2025. 3. 11. ~ 9. 30. ※예산 소진 시 모집 조기 종료
- 추진절차



2. 지원 세부내용

□ 지원 개요

- 지원규모: 45명
- 지원대상: 만 18~59세 근로자(도내 거주)를 채용한 강원지역 소재 현대·기아 협력사 또는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* (5인 이상)

구분	요건
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자동차부품산업* 기업 * 현대·기아 자동차의 협력업체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해당 기업 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* 이상을 고용한 기업 - 우선지원 대상기업(제조업: 500인 이하)
구직자 (재직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 * (예시) 25년 3월 11일 기준, 2007. 3. 11.~1965. 3. 12. 출생자 -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4.4.25~25.6.10 기간 내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*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(시용)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 채용일부터 지원대상 인정 ** 신청 이전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, 전환시점부터 인정 -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,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- 지원대상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여 재직 중인 자 -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% 이상을 받는 자

- 지원내용: 입사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간 지원금 지급
- ※ 2025.3.11. 이전 입사자는 2025.3.11. 기준으로 지원 시작일 적용

(단위: 만원)

지원수준	총 지원액	1회차	2회차	3회차	4회차
		3개월	1개월	1개월	1개월
대상자 지급액 (최저임금 100~120%)	360	180	60	60	60
대상자 지급액 (최저임금 120%이상)	600	300	100	100	100

* 각 회차별 지급주기 기준(첫 3개월, 이후 1개월 근속)을 충족하여야만 지원금 지급 가능

3.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

□ 신청 · 선정

○ 신청방법: 관련 서류는 e-mail로만 접수

- e-mail: job@gwep.or.kr

※ e-mail 제목은 “도약장려금(기업명)”로 기재

○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구분	신청기간	제출서류
사업 참여 신청	25. 3. 11 ~ 9. 30. 까지 * 예산 소진 시 모집 조기 종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참여 신청서 [서식1] • 사업주 확인서 [서식1-1]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[서식1-2] • 고용보험 확인서류 (고용보험자격 취득자명부, 사업자총괄카드) • 사업자등록증
↓		* 선정 안내: 15일 이내
채용자 명단 제출	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용자 명단 제출서 •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• 근로계약서 사본 •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• 채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• 졸업예정증명서(필요시)
↓		
지원금 지급 신청	1차	최소 고용유지기간(3개월) 충족 후 2개월 이내
	2~4차	지급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까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려금 지급신청서 • 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대장, 입금내역 등) • 기업명의 통장 사본(최초 1회) • 사업주 확인서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류

* 지급 기한: 20일 이내(서류보완일 미포함)

※ 기타 대상자 채용,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등은 사업 참여 승인 후 별도 안내

[고용보험 서류 발급방법]

• 고용보험자격취득자명부

[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▶ 증명원 신청/발급 ▶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신청
▶ 증명원 출력(PDF 저장)]

• 사업자총괄카드: 관광·서비스업 분야 지원업종 코드 확인 자료
[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▶ 정보조회 ▶ 사업자총괄카드조회]

○ 선정통보: 지원요건 및 결격사유 등 검토 후 지원 결정 통보

4. 유의사항

○ 참여 신청 시 지원 제외 대상자 요건 필수 확인

구분	지원 제외 대상자
도약 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다만, 24. 4. 25.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(정규직 전환 및 도약장려금 참여신청 후 선정되어야 함) - 채용일 기준 타 사업장에 상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-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특수고용형태종사자, 프리랜서, 노무제 공자)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(3개월 이내인자 제외) -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휴업·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,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 미고용 및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자는 가능 - 6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(예정) 자 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*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, 증손자녀 등이며, 채용일 이후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, 혼인 일자가 속한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 -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만18세 ~ 34세 이하 청년 중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의 경우 신청 불가 -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방송통신·사이버대학 등 재학자,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능 - 인력 공급업, 경비 경호업 등 기업에서 간접고용(파견·용역 등) 형태로 채용한 자 - 감원 방지 요건 위반 시 대상자의 장려금 지급 중단 및 신규 채용자 지원 유예(3개월)

- 신청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·추가 징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5. 관련 문의

- 문의처: (재)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
☎ 033-256-9644, job@gwep.or.kr